

9  
 9  
 9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417)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동자 21670 951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, 10.5.3.1.	A 강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88. 9. 12	[Handwritten Signature]	
보조 기관	부서 강 환경복지청 동자 강	협조 기관	방위당방안 [Handwritten]
기안책임자	조영선 [Handwritten]	문서 통제	1988. 9. 12 통제관
경유 수신 장	각안정조	발 인	1988. 9. 10 서울특별시 시무국
제목	보훈부 지정	발 인	1988. 9. 18 743 [Handwritten]
(제 1안) 내부결재			
1. 동자 동자 21670-407 (88.8.9)호와 관련입니다			
2. 위호에 의해 동자지정장으로 부터 보훈부 지정 지정이 있어 순령법 제 67조 지정에 따라 별정 고A안과 같이 지정하고 고A로 합니다			
정부: 1. 고A안 1부			
2. 수목관행고사 카드 1부 끝			
(제 2안)			
부A: 동자지정장			

장소 : 환경복지국장

제목 : 결연건

1. 동부중동 216호 - 407 (88. 8. 9) 호와 관련임

2. 위도에 의한 보충부 지정요청에 대하여  
산림법 제 67조 규정에 따라 변경 과시안과 같이  
지정하리 고사하였으나

3. 소유자에게 즉시 지정사실을 통지할  
것이어

4. 지정된 보충부에 대하여 통지한설리  
주변정비. 병태총 방계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

첨부 : 과시안 1부 끝

(제 3안)

수신 : 김복관 619 발신 : 환경복지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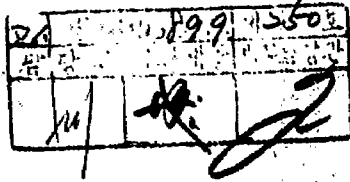
제목 : 사보게재 의뢰

산림법 제 67조 규정에 따라 보충부를  
지정하리 고사한사 하오니 변경 과시안을 사보에  
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 : 과시안 1부 끝

고 시 ( 안 )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

보 호 수 지 정

산림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를 지정하였기 고시 합니다.

1988. 9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( 보 호 수 지 정 내 역 )

지정번호	지정품격	수 종	주 수	수 목 현 황			
				수 형	수 고	흉고둘레	수관직경
1-1-1-41	동나무	느티나무	1주	300년	18m	3.3m	20m

소 재 지	소 유 자
종로구 가회동 5번지	종로구 가회동 5번지 김상만

4587